일제이 《조선대형령》조작실시의 범죄적성격

최 성 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 일제는 여러가지 파쑈적악법을 조작하고 조선사람들에게 억지로 〈죄〉를 들씌웠으며 우리 인민들의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는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3권 169폐지)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야수적인 만행들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뀐다고 해도 결코 용서받을수 없다.

일제가 감행한 죄행중에서도 가장 악랄한것은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고 강제적폭력 수단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에 대한 폭압통치를 실시한것이다.

《한일합병조약》날조후 식민지폭군으로 들어앉은 초대총독 데라우찌 마사다께는 《이땅에 림함에 있어서 일심으로 치안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것이외의 다른 생각이 없으니 … 함부로 망상을 품고 감히 시정을 방해하는자가 있으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다.》고 공공연히 지껄이면서 저들의 폭압정책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으며 중세기적형벌을 포함한 각종 폭력수단들을 동원하여 식민지악법들을 수많이 조작공포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1912년 3월 18일에 《조선총독제령》 제41호로 조작하여 1920년 4월까지 실시한 《조선태형령》이다.

일제는 《조선태형령》의 조작실시를 통하여 조선인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것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세계식민지통치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범 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의 《조선태형령》조작실시의 범죄적성격은 첫째로, 이 악법을 오직 조선인민에게 만 적용하며 우리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조작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대형은 몽둥이로 매를 안기는 형벌로서 원래 봉건통치시기에 많이 실시되였으며 근대시기 특히 19세기말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으로 형벌종류에서 거의나 삭제되였다.

그러나 일제는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무단통치에로 이행하면서 《명치유신》후 일본본토에서는 폐지된 중세기적형벌인 태형을 부활시켜 《조선태형령》이라는 악법까지 조작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일제는 《조선태형령》을 오직 조선인민만을 탄압하기 위한 악법으로 조작하였다. 《조선태형령》의 제13조에는 《본령은 조선사람에 한해서 적용한다.》고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일제가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시기에 많은 악법들을 제정하여 실시하였지만 악법 그자체에 조선사람만을 그 적용의 대상으로 찍어 밝혀놓은 법은 《조선태형령》밖에는 없다. 그렇기때문에 후세의 사람들도 《조선태형령》을 론할 때 조선민족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평하였다.

일반적으로 법은 국가 또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구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령역안에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다른 나라나 지역에 서 온 외교관인 경우에 치외법권이 적용되지만 일반외국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나라 와 지역에서 실시하는 법이 적용되며 그것은 이전 시기에나 현시기에나 변함이 없다.

일제가 《조선태형령》을 조작할 당시 우리 나라에는 17만 1 500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외교관이 아니라 일반인들이였다. 그리고 일제가 1910년 8월 29일에 공포한 《천황》의 《칙령》과 9월 30일에 공포한 《조선총독부 및 그 소속관제》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천황》과 일본정부에 복종하며 조선에서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일본국가권력기구의 하나로 존재하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조선을 《제국의판도》 즉 일본령토의 한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줴치였다.

이것은 결국 법률상견지에서 보나 일제가 규제한 《제국의 판도》즉 일본령토의 한 부분이라고 한 점에서 볼 때 조선사람이건 일본사람이건 똑같은 법률이 적용되여야 한다 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제는 재조일본인들을 《조선태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였으며 오직 조선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악법을 적용한다고 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일제의 극심한 민족차별정책, 탄압정책의 집중적표현의 하나로서 조선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위한 악법을 따로 만들어놓고 적용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일제는 《조선태형령》을 우리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할것을 목적으로 조작하였다.

그것은 제2조에 규제된 《100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야 할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수 있다.(1. 거주하여 사는 집이 없는 사람, 2. 무산자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의 내용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제2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조선태형령》에서는 태형을 100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의 하나) 등의 형벌 또는 징계수단들을 대신하는 폭력수단으로 규제하였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지만 《조선태형령》에서는 태형을 범죄가 아니라 다른 형벌을 대신하는 폭력수단의 실시로 그 적용대상을 규제하였다.

일제가 벌금이나 과료대신에 태형을 적용한것은 우리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제의 식민지적략탈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였으며 집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날로 늘어만 갔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벌금과 과료와 같은 법집행이 불가능하였다는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일제는 파쑈폭압법에 의한 《징계》를 집행할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일제는 우리 인민들을 벌금이나 과료에 처할수 없 을 때 품이 적게 들면서도 폭압의 효과가 큰 태형을 적용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할 목적을 추구하였다.

이처럼 《조선태형령》은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조작된 식민지 악법이였다.

일제의 《조선태형령》조작실시의 범죄적성격은 둘째로, 태형의 집행방법이 매우 잔인 하고 즉결처분의 형식으로 실시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일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태형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조선태형령》에서는 태형의 집행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하였다.

《제6조. 태형은 태로 어깨를 때려 집행한다.

제7조. 태형은 태 30개이하에서는 1회로 집행하며 30개로 늘어날 때마다 1회를 가산하다.》

제6조는 태형의 집행에서 매를 안기는 부위는 어깨였으며 태로 어깨를 때리는 방법으로 적용되었다는것, 제7조는 태 30개를 1회로 집행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매를 어깨에 안기는것은 태형을 적용하는 방법이 매우 혹독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어깨는 사람의 몸의 다른 부위에 비해볼 때 아픔을 더 많이 느끼고 뼈가 쉽게 부러질수 있으며 상처가 인차 아물지 않아 심한 고통을 오래 받을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일제는 이것도 부족하여 태형을 더욱 악독한 방법으로 집행할수 있도록 잔인 한 방법들을 계속 고안해내였다.

그것이 바로 《조선태형령》이 공포된지 얼마 안되여 1912년 12월 30일 총독훈령 제 40호로 조작되고 실시된 《태형집행요령》이였다.

이 악법에 의하면 태형을 받는 사람을 형판에 엎드려 눕히고 두팔과 두다리를 네귀에 비끄러맨 다음 어깨를 드러내고 매를 안긴다는것, 형을 받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경우에 젖은 천으로 그 입을 틀어막을수 있다는것, 찬물을 준비하고 수시로 먹일수 있다는 것 등이였다.

두팔과 두다리를 결박당한 사람은 저항력을 전혀 가질수 없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몽둥이로 매를 맞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에 가해지는 타격과 아픔을 그대로 감수할수 밖 에 없으며 그에 대한 조건부적인 반사작용으로 나오는것이 고함이다.

그러나 소리도 칠수 없게 젖은 천으로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모진 아픔을 모두 육체적으로 감수하도록 하고 찬물까지 먹여가며 자각을 높여 아픔을 최대로 느끼게 한 일제의 극악한 살인귀적만행이야말로 짐승도 무색케 하는 인간백정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야수적인 만행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태형집행요령》에 규제된 잔인한 태형의 집행방법들은 그야말로 일제교형리들에게 우리 인민에 대한 심한 육체적고통과 지어 살인적행위까지 공공연히 승인한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일제는 태형을 즉결처분의 형식으로 악독하게 실시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초시기에 조작공포된《범죄즉결령》의 제1조에는《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자는 자기의 관할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즉결할수 있다.》라고 하 고 1항에 《구류, 태형(태형은 조선사람에게 한한다.)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제하였다.

《범죄즉결》이란 《범죄자》들의 《범죄》를 법에 비추어보거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재판심리를 거치지 않고 자의대로 형벌에 처하는 야만적인 폭압방법을 말한다. 일제가 식민지폭압통치의 기본담당자였던 경찰들에게까지 이러한 특수권한을 준것은 전적으로 조선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기 위해서였다.

대형과 관련된《범죄즉결령》의 이 조항은 일제경찰들이 식민지통치에 순응하지 않는 우리 인민들을 마음먹은대로 아무때나 때려도 된다는것을 악독하게 규정한것으로서 그 폭압적성격을 매우 강하게 하였다. 그것은 《태형령》이 적용된 1920년 4월까지의 기간에 태형에 의한 즉결인원이 27만 2 024명으로서 이것은 같은 기간 경찰의 각종 범죄에 관한 즉결인원 54만 7 738명의 49.7%에 해당되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 인민들을 자의대로 마구 때린 야만적 인 행위들은 조선인민을 탄압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제의 야만성 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제의 《조선태형령》조작실시의 범죄적성격은 셋째로, 태형을 소년이건 너자이건 대 상에 관계없이 비인간적인 만행과 결합하여 실시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조선태형령》의 제5조에는 《태형은 16살이상 60살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적용할수 없다.》라고 규제되여있었다.

이 조항은 태형을 16살이상부터 60살이하의 남자들에게만 적용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태형령》의 집행에서는 그가 소년이건 녀자이건 가리지 않고 적용하였다. 일제는 나어린 소년들에게 태형을 야만적으로 적용하여 불구자로 만들거나 지어 목숨까지 잃게 하였다. 이러한 만행은 《조선태형령》의 존재기간은 물론 강점통치 40여년의 전과정에서 찾아볼수 있으며 특히 우리 인민의 거족적인 3.1인민봉기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3.1인민봉기를 직접 본 한 외국인은 글에서 1919년 5월 강계에서 체포된 11명의 소년들이 선천에 끌려와서 감금되여 3일동안 련속 곤장을 맞았다. 여기서 반죽음이 되여석방된 그들은 그곳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중 2명은 곧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소년들은 대부분 허리가 부러졌거나 심한 타박상을 입어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애젊은 나이에 장애자가 되여버렸다라고 하였다.

심지어 일제는 녀자들에게도 태형을 악독하게 적용하면서 비인간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너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육체적으로 연약하며 특히 반드시 모성으로 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사 그 범죄가 중할지라도 육체에 심한 고통을 주는 형벌을 적용하 지 않는것은 어느 사회,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인 일로 간주되고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태형령》에서 남자들에게만 태형을 적용한다고 규제하고서도 실 지로는 조선녀성들에게도 태형을 가혹하게 적용하면서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그 대표적실례가 1919년 3월 하순 일제교형리들이 경성(서울)에서 체포한 31명의 녀학생들에게 태형을 가혹하게 적용한 후 불고문, 륜간, 라체상태에서의 구류 등 인간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야수적인 폭행을 가한것이다.

일제교형리들이 태형을 적용하면서 비인간적인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할수 있은데는 《조선태형령》에 태형을 비밀리에 적용하도록 한것과도 주요하게 관련되여있었다.

《조선태형령》의 제11조에는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제의 파쑈교형리들이 아무런 법적구속력도 없이 무제한하게 우리 인민들에게 비인간적인 만행을 감행하면서도 외부의 비난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하는 유리 한 조건을 지어주었던것이다. 력사를 돌이켜볼 때 20세기 전반기 여러 제국주의렬강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폭력에 의거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지만 일본제국주의처럼 중세기적암흑시대에 존재하였던 태형의 실시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악랄하게 실시한 례는 찾아볼수 없다.

조선사람을 짐승만큼도 여기지 않고 중세기의 형벌까지 적용하며 야수적인 만행을 일삼은 일제의 죄행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우익정객들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을 감추어보려고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는 《인간적》이였다느니, 《인도주의 적》이였다느니 하는 뻔뻔스러운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력사의 진실은 가리울수도, 지울수도 없다.

일본은 과거범죄를 한사코 부정외곡하는데 머리를 쓸것이 아니라 허심하게 인정하고 사죄배상하여야 한다.

실마리어 《조선태형령》, 즉결처분